# 은계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

제 정:2021. 09. 01.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유아교육법」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11에 따라 경기도 공립유치원에 두는 은계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구성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 3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10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단, 해당연도 3월 1일자 유아수가 100명 미만일 경우, 위원의 정수는 5명으로하되. 학부모위원 3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 ② 운영위원회 위원 중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남성 혹은 여성 지원자가 없을 경우 성을 고려하지 않고 구성한다.
- 제3조(임원 및 간사)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은 학부모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⑥ 제4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⑦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 3 장 위원의 신분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은 본 유치원에 재학 중인 유아의 학부모이어야 한다

- ②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 ③ 위원은 다른 유치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부터 제7호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 ①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경우
- ② 학부모위원이 자녀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경우. 단,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 ③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④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경우
- ⑤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 ⑥ 위원이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⑦ 사직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한 경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2013,02,28.)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부터 다음년도 3월 말일까지로 한다.(단, 2021년도에는 9월 1일 개원으로 위원선출일로부터 다음년도 3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상정된 안건에 한하여 유치원 운영에 관여할 수 있다.
- ③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이외의 다른 어떤 비용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④ 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직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4 장 위원의 선출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 선출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이하 "학부모위원선관위"라 한다)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이하 "교원위원선관위"라 한다)로 구성 운영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전체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역할, 선출방법 등에 대한 홍보, 안내, 후보자등록 및 공지,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③ 학부모위원선관위는 학교장이 위촉한 학부모 2명 이내로 구성하고 교원위원선관위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교직원 2명으로 구성하며,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각 선출관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④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단, 선거권은 보유한다.
- ⑤ 선출관리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선출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9조(학부모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가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필요시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선출할 수 있다.

- ② 학부모위원선관위는 선거일 2주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일주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학부모위원선관위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0조(교원위원의 선출) ①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 ② 교원위원선관위는 선거일 2주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일주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교원위원선관위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교직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1조(투표방법 및 당선자 결정) ① 투표는 무기명 직접투표로 한다.

- ②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동수투표자가 있어 위원의 정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③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 개시 시작 전까지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동수이 거나 적을 경우, 입후보자를 무투표 당선으로 처리하고 미달된 인원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추가로 선출한다.

제12조(보궐선거) ①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보궐선거로 선출한다. 단,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궐선거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 5 장 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3조(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유치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7.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시행령 제22조의 5)
- 8.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 9.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학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10.「교육공무원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 11.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1. 유치원 홈페이지
  - 2. 학부모 총회
  - 3. 가정통신문
  -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 ③ 제13조에 따른 건의 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제 6 장 운영위원회 운영

제14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연 4회로 정한다. 단,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학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단, 학교장이 긴급하게 심의해야 할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안건의 제출 및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의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단,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16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5조에 따른 위원의 자격상실 및 규정의 제·개정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회의 공개원칙) 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5일 전까지 유치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유아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 7 장 규정의 개정

제20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1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학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유치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 09. 0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대로 시행된 것으로 한다.